

의결권 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 일시	의안내용	의안 세부내용	의결권주식수 등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주식수 (주)	지분비율 (%)	행사 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주식수		사유	
이리크르헨기업	유가증권	기타	2019-09-25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자본 준비금 감액의 건 제3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연금 배당의 건 제5호 의안: 제28기 이사회수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제28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15년차(28.29기) 운영예산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감사 중립의 건			51,532	0.08					51,532	의결권 행사여부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불행사	
이리크르헨기업	유가증권	기타	2019-12-20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40,411	0.06	40,411					40,411	의결권 행사여부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불행사	
삼성SDI	유가증권	기타	2020-03-18	제1호 의안: 제5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제2-1호: 사내이사 전영현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권오경 선임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김학민 선임의 건 제2-4호: 사외이사 박태준 선임의 건 제2-5호: 사외이사 최원욱 선임의 건		15,594	0.02	15,594	15,594			15,594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한견을 부여함' 제1-B호: 적정 배당배당에 해당하며, 현금배당 확대를 위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요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감사위원 권오경 선임의 건 제3-2호: 감사위원 김학민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위원 박태준 선임의 건 제3-4호: 감사위원 최원욱 선임의 건	
삼성전자	유가증권	기타	2020-03-18	제1호 의안: 제51기(2019.1.1 ~ 2019.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의 중요재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최용준 선임의 건	1,450,462	0.02	1,450,462	1,450,462				1,450,462	제1-A호: '적정한'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제1-B호: 전년도 연속 대규모 배당 대비 배당 기업에 대한 연도 배당률과 배당성장 고려 시 안정적 수준임 주요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해당 기업의 과거 보수연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은 수준으로 이사회의 규약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연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엔에이저스텍14호	코스닥	기타	2020-03-18	제1호 의안: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연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연도 승인의 건		244,621	2.84						244,621	의결권 행사여부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불행사	
현대모비스	유가증권	기타	2020-03-18	제1호 의안: 제4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승인의 건(2019년1월1일 - 12월31일) 제2호 의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결산배당금 :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예정) ※ 중간배당: 보통주, 우선주 1,000원 지급금 제3-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① 제3-1-1호: Karl-Thomas Neumann (임기 3년) ② 제3-1-2호: 장영우 (임기 3년)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① 제3-2-1호: 최의선 (임기 3년)	21,005	0.02	21,005	21,005				21,005	적정한'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함. 핵심 현금배당 범위 안에서 기업 현금배당 결정여부 안정적 배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제3-1-1호: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 없는 것으로 판단 제3-1-2호: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경영성과의 산업 특성 등 고려하면 분석기업이 이사회의 규약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연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현대차	유가증권	기타	2020-03-19	제1호 의안: 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명특약)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은수)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상훈)	56,975	0.03	56,975	56,975				56,975	제1-A호: '적정한'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배위에 해당하며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사회 임직 임명 및 주주지지를 훼손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해당 기업의 과거 보수연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은 수준으로 이사회의 규약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연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KB금융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2019 회계연도(2019.1.1 ~ 2019.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리버살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선임)	제3-1호: 가리버살무이사 후보 현민 제3-2호: 사외이사 후보 Stuart S. Solomon 제3-3호: 사외이사 후보 손승호 제3-4호: 사외이사 후보 최영희 제3-5호: 사외이사 후보 정구환 제3-6호: 사외이사 후보 권순호	106,337	0.03	106,337	106,337				106,337	제1-A호: '적정한'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범위 배위에 해당하며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익 증가에 따른 배당 증가 공헌적 이사회 내 역할이 주주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긍정적이라고 판단 주요자의 가리버살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 권순호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 최영희 선임의 건 제4-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정구환 제4-4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권순호	
LG생활건강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2019 회계연도(2019.1.1 ~ 2019.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연도 승인의 건	·1주당 액당배당금: 보통주 11,000원 / 우선주 11,050원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재욱) 제2-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기영) 제2-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재욱)	2,799	0.02	2,799	2,799					2,799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한견을 부여함' 제1-B호: 현금배당 지급여력 확대의 것으로 보이며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배당 확대는 주주에게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감사위원 권순호 선임의 건 (후보: 장재욱) 과거 보수연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사회의 규약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연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LG화학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리버살무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정동민)) 제4호 의안: 이사 보수연도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포함 ·1주당 액당배당금: 보통주 2,000원, 우선주 2,050(99) 제2-1호: 가리버살무이사 권순호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자동성 선임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정동민 선임의 건	14,271	0.02	14,271	14,271					14,271	제1-A호: '적정한'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현금배당 지급여력 상승에 따라 임기 배당 추세를 유지한다 판단 주요자의 가리버살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요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불법 상(장)계 결사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사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과거 보수연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합리적인 수준, 이사회의 규약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연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의결권 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 일시	의안내용	의안 세부내용	의결권주식수 등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주식수 (주)	지분비율 (%)	행사 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주식수
SK하이닉스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72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176,736	0.02	176,736	176,736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부여받음 제1-B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는 추후보고서 고지 예정 중인 1,000원을 제외한 액정 지급의무, 연간 Free Cash Flow의 5%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 주주에게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해 상세한 고지 및 내용 있음. 구체적인 고지는 추후 예정됨
				제2호 의안: 장관 변경의 건		176,736							이반 사법 목적 변경 안이 주주기치를 훼손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석화)		176,736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기타비상임이사 선임의 건(후보: 박정호)		176,736							후보자의 기타비상임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신장환) 제5-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한태하)	176,736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1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허영균) 제6-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신정환)	176,736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제7-3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한태하)	176,736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8호 의안: 이사회 보수현도 승인의 건		176,736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9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176,736							이반 주식매수선택권은 시장 요인을 대체하지 않고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행사가 가능한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지인 기업가치 성장의 극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순채권 조항
				제10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		176,736							이반 주식매수선택권은 시장 요인을 대체하지 않고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행사가 가능한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지인 기업가치 성장의 극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순채권 조항
삼성물산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56기(2019.1.1 ~ 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9,834	0.02	29,834	29,834				제1-A호: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비율에 해당하며 현금 배당 확대를 위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겸임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겸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겸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겸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겸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회 위원 겸임의 건 제4-3호: 감사위원회 위원 겸임의 건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8기(2019.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5,027	0.01	5,027	5,027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부여받음 제1-B호: 과다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겸임의 건(재선임) 제2-2호: 사내이사 겸임(Rim John Chongbo)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2-3호: 사외이사 겸임의 건(신규선임)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삼성중공업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70기(2019.1.1 ~ 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당) 승인의 건		9,213	0.02	9,213	9,213				제1-A호: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비율에 해당하며 현금 배당 확대를 위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결권 3주, 임기 3년) 제2-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의결권 2-1호: 박대호(임기 3년))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박세민(임기 3년)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1호: 김진석(임기 3년))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하나금융지주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15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83,693	0.03	83,693	83,693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부여받음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비율에 해당하며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기업성 탄력적인 재무구조 구성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변경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장관 개칭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홍성태)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박철우) 선임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제2-4호: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제2-5호: 사외이사 (하윤) 선임의 건 제2-6호: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7명 선임)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합리적인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6호 의안: 이사회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합리적인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합리적인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8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3명 선임)	제8-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홍성태) 선임의 건 제8-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진) 선임의 건 제8-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동훈) 선임의 건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9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3명 선임)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0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3명 선임)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효성	유가증권	기타	2020-03-20	제1호 의안: 제66기(2019.1.1 ~ 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5,991	0.03	5,991	5,991				제1-A호: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비율에 해당하며 적정 현금 배당 확대를 위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결권 2-1호: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 (의결권 2-2호: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의결권 2-1호: 사외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의결권 2-1호: 사외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합리적인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삼성머스트스톡3호	코스닥	기타	2020-03-23	제1호 의안: 제7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107,645	2.35	107,645				의결권 행사여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불행사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기어라	유가증권	기타	2020-03-24	제1호 의안: 제76기(2019년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79,515	0.02	79,515	79,515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부여받음 제1-B호: 적정 현금배당 비율에 해당하며 충분한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장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주주총회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임직총 선임의 건								이반 사법 목적 변경 안이 주주기치를 훼손할 우려가 적고, 변경되는 장관은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주주총회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임직총 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임직총 선임의 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임직총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과거 보수현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현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의결권 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 일시	의안내용	의안 세부내용	의결권주식수 총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주식수	지분비율 (%)	행사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주)	(%)	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주식수
코나미	코스닥	기타	2020-03-27	제1호 의안: 2019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7,000	0.05	7,000		7,000			제1-A호: "감사위원 제정으로 인한 환경의 건을 부여받은 바, 12월말 결산일인 3월 31일까지도 종속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미비한다는 것은 회사의 역량에 의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판단 제1-B호: "최첨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의 우수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업 목적 변경안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일부 정관 변경의 건					7,000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후보자: 최원복) * 사외이사 1명					7,000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영근감사 신규선임의 건 (후보자: 신동우) * 사외이사 1명					7,000			후보자의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7,000				과기 보수한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한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7,000				분석기업의 감사 보수 지급액과 안전에서 제한한 감사 1년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15%범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강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파라다이스	코스닥	기타	2020-03-27	제1호 의안: 제49기(2019.1.1~2019.12.31)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517	0.02	20,517	20,517		제1-A호: "회장의 이익의 감사의견이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최첨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의 우수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조현재 선임의 건						20,517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감사 정상근 선임의 건						20,517			후보자의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517			과기 보수한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액은 합리적인 수준,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한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517			분석기업의 감사 보수 지급액과 안전에서 제한한 감사 1년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3%범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강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517			제1-A호: "회장의 이익의 감사의견이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최첨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의 우수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한국전력	유가증권	기타	2020-03-27	제1호 의안: 2019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승인의 건		115,825	0.02	115,825	115,825		제1-A호: "회장의 이익의 감사의견이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최첨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의 우수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2020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5,825			과기 보수한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액은 높은 수준이나 이사회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한도를 소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3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115,825			해당 정관 변경 연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제1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4,062			제1-A호: "회장의 이익의 감사의견이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제1-B호: "최첨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의 우수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외이사 김석중 선임의 건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2호: 사외이사 백영석 선임의 건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3호: 사외이사 임준수 선임의 건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4호: 사외이사 최윤의 선임의 건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5호: 사외이사 이동명 선임의 건	4,062	4,062		후보자의 과기 경력 중 과거에 피산한 안전채를 사외이사(2012.03~2014.03)의 채권 경락은 분석기업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기업가치 훼손의 여의가 있었으나 것으로 판단. 따라서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기업가치 훼손 등의 고려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6호: 사외이사 서용석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7호: 사외이사 여운정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8호: 사외이사 이형서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제2-9호: 사외이사 구분주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4,062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3-2호: 사내이사 유운출 선임의 건	4,062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3-3호: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3-4호: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황철호 선임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4,062			후보자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062			과기 보수한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수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6-1호: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관련 (제37조)	4,062			대표이사 또는 고위경영자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 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의 대표이사의 당면 이사회의 의장 직책을 분리하여 일할 부분 이사회의 업무 분장 등등을 감안하고, 임기 480일(장근제 40주, 단 제40주외2) 변경 안이 분석기업의 주주권익 개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7-8호와 병행이 불가한 제6-2호 의안에 반대함								
* 제6-2호: 위원회 관련 (제40조)	4,062	4,062			주주제안의 정관 변경 안 제7-7호(이사회의 정분규에 관한 특례)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주제안의 정관 변경 안 제7-10호(부채)과 영입이 불가하다 판단								
* 제6-3호: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4,062				정차표제도를 통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가능하고 기업은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 변경 안이 주주권익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제7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교개발의 주주채)의	* 제7-1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제25조의2)	4,062			다수의 영입 후보 연을 하나의 연으로 상정하는 집단투자 시 개별 이사 후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록을 수 있지만 개별투표는 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주제안과 충돌한다고 판단								
* 제7-2호: 이사의 선임 관련 (제30조)	4,062				집투자 중립적 영향에서 벗어난다 이사회의 정의로 다수가기 위해 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정관보다 더 강화된 정형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 고 소액 초과 변경이 목적에 적당하고 보충한다고 판단								
* 제7-4호: 이사의 직무 관련 (제35조)	4,062				주주제안은 대표이사가 주어진 경우 이사회에서 그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의 독립성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사 정관 변경이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고 보충한다고 판단								
* 제7-5호: 이사의 의무 관련 (제34조의2)	4,062				주주제안은 이사의 선양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독립성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여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이 정당하고 보충한다고 판단								
* 제7-6호: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의 의장 관련 (제37조, 제 37조의3)	4,062	4,062			주주권익과 기업가치의 동원자적 정향의 관점에서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은 한정하지만, 최근 불거진 정경환 의혹 사건 제 및 임명권 분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회 의장의 지위를 사외이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이사회가 시장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실정이라 간소화하고 판단								
* 제7-7호: 이사회의 정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제37조의2)	4,062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 한다는 것은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의사결정기관의 정분 대표성을 확보,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 제7-8호: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제40조, 제40조의2)	4,062				거버넌스위원의 설치의 건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에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지속적인 거버넌스위원회의 활동으로 주주권익 개선의 효과도 기대되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제7-9호: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제41조)	4,062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중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 제7-10호: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4,062				정관 부칙 변경 연은 가결 시 제7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제1호 의안: 제3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당당 250원(가배당률 1.76%) 예정	54,259	0.68	54,259	54,259	제1-A호: "당해 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기간을 부여함 제1-B호: "지속의 실적은 양호한 실적일수록 4분기 실적 가운데, 배당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제41조)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호 의안: 사외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호 의안: 사외이사 유운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호 의안: 사외이사 김신배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7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1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2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7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4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7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5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7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8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69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0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1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2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3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4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5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76호 의안: 사외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신규선임)	*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다 경영,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상(상장) 결격사유, 상근임직원(5년) 및 독립성 결격사유 등이 없는												